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79
----------	-----

2025. 3. 21.(금)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재주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3월 13일

-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박재주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현행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“도지사”의 용어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개정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도지사”의 용어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개정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“도지사”라는 용어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‘도지사’라 한다)”로 개정하여, 보다 일반적으로 통용

되는 표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도지사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<u>도지사</u> 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,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도지사의 책무)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.